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

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6. 16. 2010고합1687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사】주영환외 3인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김경종 외 5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3,210,600,000원을 추징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